

마트 배송 직종 표준계약서

- ※ 마트 배송 직종 표준계약서는 마트 배송 업무를 위탁하는 자와 업무를 수탁받는 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, 이를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. 이번 마트 배송 직종 표준계약서는 계약 체결 시 표준이 되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으며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당사자는 마트 배송 직종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 계약서보다 더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.
- ※ 직종 명칭은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 가능합니다.

()(이하 '위탁자'라 함)과(와) ()(이하 '수탁자'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계약(이하 '본 계약'이라 함)을 체결한다.

제1조 (계약의 목적)

본 계약의 목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()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·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.

제2조 (기본원칙)

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.

제3조 (용어 정의)

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마트 배송 : 고객의 요청에 따라 마트(물류센터 또는 점포)에서 고객이 지정한 장소로 주문 상품을 배송하는 업무
2. 배송차량 : 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화물자동차
3. 수수료 또는 보수 등(이하 '수수료 등') :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처리의 대가로서 수탁자에게 지급되는 금품

제4조 (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)

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업무를 위탁한다.

1. 상품 배송 등 주된 업무
2. 제1호와 관련된 부수적 업무
(예시) 배송을 위하여 피킹된 상품을 다시 포장하는 업무

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안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중량물 품목별 주문 수량에 대한 제한 기준을 운영할 수 있다.

1. 생수, 음료류
2. 쌀
3. 세제류
4. 대형 화장지
5. 그 밖에 위탁자가 별도로 지정한 품목

제5조 (계약기간)

-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(. .)부터 (. .)까지로 한다.
- ② 계약기간 만료 ()일 전까지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계약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.

제6조 (계약의 변경)

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(이하 '전자문서'라고 함)를 포함한다.)으로 합의 또는 동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제7조 (수수료 또는 보수(이하 '수수료 등')의 지급 등)

-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위탁업무 수행 대가인 수수료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.

1. 수수료 등 항목 및 지급기준	가. (예시) 건당 원 / 박스당 원 / 기본배송비 원 (VAT별도, 일당 0건 기준, 해당월 영업일수)
	나. (예시) 건당 인센티브 : 일 00건 초과 건당 00금액
	다. (예시) 부수적 업무에 대한 수수료 건당 원
2. 지급 시기/방법	(예시) 업무수행일로부터 0일 뒤 or 매월 0일 계좌 입금
3. 공제 내역/기준	가. (예: 사회보험료, 수탁자의 사유로 인한 손해 발생분)
	나.
4. 관련 기타 조건(특약)	(예시) 수탁자가 지정된 방식으로 업무 종료 확인 내지 통보를 하여야 지급 조건 완성 (예시) 일 평균 ()km 초과 시 유류대 지급

- ② 위탁자는 제1항 제1호, 제3호, 제4호의 세부 항목 등 내역이 표기된 지급명세서(전자문서 포함)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.
-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명세서가 본 계약 내용과 맞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위탁자는 이에 대한 확인 결과를 ()일 이내에 적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 (위탁자의 책무)

-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고객정보, 제품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.
- ② 위탁자는 위탁업무의 이행과 무관한 이유로 수탁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.
- ③ 본 조 정보, 자료 등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제7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위탁자는 수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 (수탁자의 책무)

- ①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정한 기준 및 상호 합의한 방법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를 이행한다.
- ② 수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업무의 목적, 시한 등의 달성에 필요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이행한 경우 그 결과를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- ④ 수탁자는 위탁자의 고객정보 또는 영업정보 기타 위탁자의 영업상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, 누설하거나 본 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0조 (안전보건 조치 등)

-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건강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위탁자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등 제반 법률에 따른 안전 보건 관리 활동을 하여야 하고,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천재지변, 교통사고 등으로 수탁자의 계약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, 위탁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1조 (배송차량 및 관리)

- ① 배송 업무에 투입되는 차량의 종류는 ()로 한다.
- ② 배송 차량에 다음과 같은 장비를 설치한다.
 - 1. (예시) 듀얼컴프 냉동기
 - 2. (예시) 타코미터(디지털 온도기록계)
 - 3. (예시) 온도조절장치
 - 4. (예시) 차량 적재함 옆문

- ③ 차량의 도색 및 디자인, 도색·부착물 제거 비용 등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수탁자는 운행 전·후 자신의 책임하에 차량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- ⑤ 수탁자는 배송차량의 보험 가입 및 지속 여부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보험 가입 및 지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탁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 (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)

- ① 위탁자가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활용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일이나 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수탁자에게 요청할 경우, 수탁자는 해당 요구를 거절 또는 제14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, 위탁자와 협의하여 제6조에 따른 계약 변경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.
- ② 위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, 지급할 수수료 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한 수수료 등을 환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제13조 (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)

-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.
-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국적, 성별, 종교, 장애 등을 이유로 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업무 수행 환경이나 조건을 차별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.

제14조 (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)

- ① 수탁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, 수탁자는 자신의 업무를 대신 이행할 자를 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수탁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할 자를 구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천재지변(폭우, 폭설 등) 등 불가항력적 이유와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는 교통사고, 배송 업무로 인한 재해·질병 등 사회통념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이유로 업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위·수탁자간 협의하여 1항의 의무를 면제한다.
- ③ 수탁자는 업무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후 위탁자에게 사고 사실을 즉시 알리고 사고를 수습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탁자는 제10조제3항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.

제15조 (계약의 해지 등)

-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기간 중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대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()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1. 일방 당사자가 계약조건을 미이행한 경우
 2.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 관련하여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

- ③ 위탁자와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1. 본 계약의 체결 또는 업무의 수행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
 - 2.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령상 면허 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면허 등이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
 - 3. 법률 또는 본 계약상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 본 계약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④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구체적인 해지사유를 명시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6조 (손해배상)

-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② 위탁자와 수탁자 이외의 제3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자 또는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에게 적극 협조한다.
- ③ 위탁자는 자신의 손해가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수탁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.
- ④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권리 양도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7조 (분쟁 해결)

-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른다.
- ②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등에서의 조정, 화해, 소송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.

제18조 (사회보험 가입)

- ① 수탁자는 「고용보험법」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및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다.
- ② 위탁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수수료 등에서 원천공제하여 제1항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제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[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)을 포함한다]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